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망한 이용자가 남긴 정보(디지털유산)를 유족에게 제공〉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046호)
-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252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사망한 이용자가 남긴 정보(디지털유산)를 유족에게 제공(안 제44조 의11 신설)	4

I. 제안경위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8046호)

가. 발 의 자 : 정준호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2. 11.

다. 회 부 일 : 2025. 2. 12.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9252호)

가. 발 의 자 : 신영대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3. 21.

다. 회 부 일 : 2025. 3.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8046호)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가족이 남긴 마지막 카톡, SNS에 남긴 사진, 동영상 등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고,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부고를 알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음.

유가족들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이 부분의 제도가 미비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였음. 이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유산의 승계

및 관리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그간 디지털 유산은 ‘인격권’에 관한 사항으로 치부되어 민법상 상속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있어 왔음.

그동안 유족들의 요구에 대해서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 때문에 공개할 수 없고, 사회적 대형 참사 또는 재난 시에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반해 제한적으로 공개해 왔음.

이에 남겨진 유가족들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선의나 재난의 크기가 아니라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정해진 절차와 테두리 안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들의 사고 수습을 돕고, 고인과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소유자가 잊혀질 권리를 행사하여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망인의 디지털 인격권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의11 신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9252호)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가 남긴 정보(이하 “디지털유산”이라 한다)의 처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최근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게재·유통한 게시물 등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용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 등이 이를 승계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이용자의 디지털유산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디지털유산의 관리자 지정, 삭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유산의 처리방법을 미리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유산에 대한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Ⅲ. 검토의견

1. 사망한 이용자가 남긴 정보(디지털유산)를 유족 등에게 제공(안 제44조의11 신설)

가. 개정안 요지

구분	정준호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의무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의무 내용	- 이용자 사망·실종신고 시 <u>디지털유산의 제공</u> (사망·실종신고 전 해당 정보의 제공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외)	- 이용자 사망 시 <u>디지털유산의 관리권한 승계</u> - 이용자가 사망 전 디지털유산의 처리방법(관리자 지정, 삭제 등) 지정 시 해당 처리방법에 따라 디지털유산 처리
디지털유산의 범위	- 이용자의 계정에 저장된 <u>연락처</u>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이용자가 <u>작성·전송·게시한</u> <u>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u> <u>등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정보</u>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게재·유통한 <u>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u> 등의 정보로서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처리·보관 중인 정보
제공받는 자	유족(「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	상속인
준용규정	-	기타 사항은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정준호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신 설>	제44조의11(사망한 이용자가 남긴 정보의 제공) 정보통신서비	제44조의11(디지털유산의 처리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

현행	정준호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이용자의 유족(「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요청하는 경우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보관 중인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용자의 계정(정보통신서비스	공자는 이용자의 상속인이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게재·유통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로서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처리·보관 중인 정보(이하 “디지털유산”이라 한다)의 관리권한을 그 상속인에게 승계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디지털유산의 관리자 지정, 삭제 등 대통

현행	정준호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한다)에 저장된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2. 이용자가 작성·전송·게시한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유산의 처리방법을 미리 지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지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디지털유산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유산의 승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디지털유산의 승계 등 디지털유산의 처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이용자가 작성·전송·게시한 정보 내지는 정보 관리권의 승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러한 소위 ‘디지털유산’의 승계는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던 권리가 이용자의 사망을 이유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민법상 상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민법상 상속은 기본적으로 재산처분의 자유를 사후에도 미치도록 하는 것으로, 「민법」 제1005조¹⁾는 상속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임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디지털유산의 경우 현행법상으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그러나 이용자가 남긴 정보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판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설령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고인을 추모할 권리 측면에서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디지털유산 또는 그 관리권의 승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12·29 여객기참사와 관련하여 유가족들이 희생자의

1)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정 정보 및 비밀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음²⁾.

- 현재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정책규정에서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계정 접속권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사이버머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의 경우 관계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상속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게시물 등 공개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백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디지털유산 관련 KISO 정책규정>

제3절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물 관련 정책

제27조(목적) 본 절은 인터넷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생전의 이용한 계정 및 게시물 등의 처리 방식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8조(계정) ① 회원사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계정 접속권 등을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계정 중 사이버머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의 경우 관계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이를 상속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9조(계정 폐쇄 요구 등) ①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업자에게 소명하여 피상속인의 계정 폐쇄를 요청할 수 있다.

1. 삭제를 요청하는 계정이 피상속인의 계정이라는 사실
2.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3. 요청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이라는 사실

② 사업자는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상속인에게 게시물 등 공개된 콘텐츠를 별도의 매체에 복사하여 주는 백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백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게시물의 범위는 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 경제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2) 김현수, ‘네이버·카카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계정정보 공개불가 결론’, 연합뉴스, 2025.1.6.

- 참고로 디지털유산의 승계와 관련한 해외 입법사례를 보면³⁾,
 - 미국은 2014년 연방 차원에서 미국 통일주법위원회가 「디지털 자산에 관한 수탁자 접속 통일법(Uniform Fiduciaries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UFADDA)」을 승인하였고, 2015년에는 이를 수정한 「수정된 디지털 자산에 관한 수탁자 접속 통일법(Revised Uniform Fiduciaries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RUFADDA)」을 제정하여 대부분의 주에서 이를 도입 중임.
 - 프랑스는 2016년 10월 제정한 「디지털공화국을 위한 법률 (Loi n° 2016-1321 du 7 octobre 2016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에서 개인이 사망 후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독일 연방대법원은 기존 상속법상 포괄승계 원칙을 적용하여 2018년 페이스북(Facebook) 이용 계약에 따른 계정접속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이에 개정안들은 정보통신망법에 디지털유산의 승계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첫째, 디지털유산의 승계가 이용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박소영, ‘고인(故人)의 디지털 정보 처리 현황과 과제’, “NARS 현안분석” 제347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3.7.

- 두 개정안은 모두 이용자가 사망(또는 실종선고) 전에 디지털유산 승계를 거부하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에게 디지털유산(또는 그 관리권한)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이용자가 작성·전송·게시한 정보 중에는 이용자의 내밀한 사생활 등 공개를 원치 않거나 공개되는 경우 이용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용자가 일생동안 이용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광범위하여 이용자 자신 으로서도 명시적인 승계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하는 범위를 미처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용자가 사망 전에 명시적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디지털유산 일체를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7%가 고인의 디지털 유산을 가족에게 양도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그 이유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35.45%), 잊힐 권리(24.1%) 등이 제시된 바 있음⁴⁾.
- 둘째, 디지털유산의 승계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이용자의 계정에 저장된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는 제3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용자가 작성·전송·게시한 정보 중에는 명예훼손 정보 등 타인의 권리를

4) 손지혜, ‘디지털 유산이 뭐죠?... 인지도 낮아 사회적 논의 필요’, 전자신문, 2025.1.23.
(박소영, ‘고인(故人)의 디지털 정보 처리 현황과 과제’, “NARS 현안분석” 제347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3.7.에서 재인용)

침해하는 정보⁵⁾나, 개인의 사상이나 신념, 사생활 등에 관한 민감정보⁶⁾, 공개되는 경우 기업 등의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기밀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디지털 유산 제공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현행법상 권리침해정보 및 개인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셋째, 디지털유산의 승계와 「민법」상 상속은 그 취지와 내용이 상이한바, 디지털유산의 승계인을 「민법」상 상속인으로 하고 디지털유산의 승계에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민법」은 상속에 있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되도록 하고,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

5)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같음하여 상속인이 되도록 하며(대습상속),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이 되도록 하고 있음⁷⁾.

○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법」상 상속의 경우 사망한 자의 재산에 대한 적정한 처분이 목적인 반면, 개정안에 따른 디지털유산 승계의 목적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정보의 처분뿐만 아니라 고인에 대한 추모와 생전의 추억 보존 등 정서적인 측면도 포함됨.

○ 이를 고려할 때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민법」상 정해진 상속의 순서에 따라 디지털유산을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 디지털유산 승계의 정서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한편, 신영대의원안은 디지털유산의 승계에 관하여 개정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디지털유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상속분⁸⁾, 상속재산관리인⁹⁾ 등 「민법」상

7)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같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상속 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준용되는 규정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사망·실종 전에 디지털유산 승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디지털유산 승계로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자가 승계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하여 승계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승계인의 범위 및 승계 가능 정보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후에 법제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상속인에게 제공되는 정보에 고인이 공개하기를 원치 않는 정보, 민감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어 고인의 잊힐 권리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며,
제공되는 정보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제3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제공받는 자의 범위를 「민법」에 따른 상속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고인이 원하지 않는 다수의 유족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 고인의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율할

8)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9)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이용자가 상속인에게 비밀로 하고 싶은 정보도 제공 대상 정보에 포함되어 이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며, 이용자의 디지털 유산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생전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이를 국가가 법률로써 포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개정안의 문언만으로는 디지털유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떠한 항목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며, 고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한 자가 민법에 따른 적정한 상속인에 해당하는지를 사업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렵고, 디지털유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등 다양한 권리가 내재되어 있어 이를 타인에게 승계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는 엄격하고 정확하게 확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용자가 생전에 지정한 자에게 연락처 정보 등의 디지털유산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
